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7호 2024. 2. 2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고 시

- 남원시 고시 제2024-20호 남원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-----1

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2024-241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-----3
- 남원시 공고 제2024-245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14
- 남원시 공고 제2024-246호 남원시의회 의정활동비(2024~2026년)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-----18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고시 제2024-20호

남원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남원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인 『남원 운봉배수지 증설사업』 추진을 위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(☎063-620-645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
2024년 2월 2일

1. 사업의 종류 : 남원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
2.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, 사업의 규모
 - 가. 명 칭 : 남원 운봉배수지 증설사업
 - 나. 사업의 위치 및 규모
 - 사업의 위치 :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541번지 외 1필지
 - 사업의 규모 : 1,005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남원시장
 - 나. 주 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
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고시일 ~ 2025년 12월 31일
5. 사업시행지의 위치도,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: 실음생략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(※ 붙임참조)

〈편입 토지 조서〉

일련 번호	토지소재지					공부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		비고
	시	읍	리	지번	지목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소계			2필지			1,005	1,005					
1	남원	운봉	가산	541	전	734	734	남원시				
2	남원	운봉	가산	542	전	271	271	남원시				

남원시 공고 제2024 - 241호

「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1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1. 개정이유**

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신설 (안 제3조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01. 31. ~ 2024. 02. 20.**4. 의견제출**

가.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남원시보건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66 /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, 남원시보건소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063-636-5931), 직접방문, 전자메일 (ailow@korea.kr) 등

5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담당자 이주희 (063-620-7937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4. 1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: 건강생활과장

1. 개정이유

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신설 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 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24. 1. . ~ 2024. 2. .(20일간)

- 결 과:

2) 비용추계서: 첨부

3) 규제예비심사: 완료

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
5) 부패영향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에 한한다”를 “사람에 한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남 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 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<u>자</u>에 한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에 한정한다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</u></p>

붙임

관계법령

붙임

관계법령

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8., 2015. 7. 6., 2020. 3. 4., 2020. 12. 15.>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2.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
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6.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
7. 감염병병원체(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,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) 수집·검사·보존·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(藥劑耐性 監視)
8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- 8의2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
9.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
10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·방역 물품의 비축
11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
12. 기후변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·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

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 14.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 15.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 및 훈련
 16.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,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
 17.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, 특성 분석,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, 보고서 발간 및 지침(매뉴얼을 포함한다) 고시
- 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.>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·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.>

□ 저출산·고령화사회 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-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9조(모자보건의 증진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·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,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재정수반요인

- 선택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,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

○ 관련조문

-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 기본법」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「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」 제 4조(접종비용 지원)

2. 비용 추계결과

○ 비용추계의 전제

-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: 99,000천원(11천원X9,000명)
- 대상포진 예방접종 생백신 구입비 : 54,600천원(84천원X650명)
-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백신 구입비 : 182,880천원(360천원X608명)
- 그 밖의 필요한 예방접종(폐렴13가) 백신구입비 : 80,300천원(73천원X1,100명)

○ 비용추계의 결과

- 연간 예산 계획 : 416,780천원 [※ 2024년도 전체 예산]
 -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: 99,000천원
 - 대상포진 예방접종 생백신 구입비 : 54,600천원
 -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백신 구입비 : 182,880천원
 - 그 밖의 필요한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: 80,300천원

- 연도별 예산 추계

(단위:천원)

연 도	합계	2024	2025	2026	2027	2028
총비용	1,798,780	416,780	345,500	345,500	345,500	345,500
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	495,000	99,000	99,000	99,000	99,000	99,000
대상포진 백신 구 입비	902,280	237,480	166,200	166,200	166,200	166,200
그 밖의 필요한 예방접종 백신구 입비	401,500	80,300	80,300	80,300	80,300	80,300

3. 재원 조달 방안

- 재원조달계획 : 전액 시비 편성

4. 그 밖의 사항

- 작 성 자 : 건강생활과장 하진숙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	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공고 제2024-245호

「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1일

남 원 시 장

**『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』
일부개정조례안****1. 개정이유**

주민참여예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분리·운영중인 위원회를 통합하여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를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내용 중, ‘지역회의’ 관련 조항 삭제 (안 제11조제2항3호)
- 나. 분과위원회의 설치 내용 중, ‘지역회의’ 관련 조항 삭제(안 제17조제3항)
- 다. 읍·면·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항 삭제 (안 제18조)
- 라.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 내용 중, ‘지역회의’ 관련 조항 삭제(안 제19조제1항)
- 마. 재정 및 실무지원 내용 중, ‘지역회의’ 관련 조항 삭제(안 제20조)
- 바. 수당 내용 중, ‘지역회의’ 관련 조항 삭제 (안 제22조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2. 1. ~ 2024. 2. 20. (20일간)**4. 의견제출**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기획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- 우편번호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기획실

다. 의견 제출 방법

- 서면, 이메일(seul6633@korea.kr), fax(063-620-6702) 및 직접방문 등

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획실 예산팀(☎063-620-6019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6. 붙임 : 「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	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남원시 공고 제2024-246호

남원시의회 의정활동비(2024~2026년)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(2023.12.14.)에 따른 남원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(2024년~2026년)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남원시민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2. 1.

남 원 시 장

1 공청회 개요

- 개최일시 : 2024. 2. 16.(금) 14:00 ~ 15:00
- 개최장소 : 남원시청 대강당(1층)
- 주 재 자 :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
- 주요내용
 - 남원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금액과 결정 이유 설명
 -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찬·반 발표 및 질의응답 등
 - ※ 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상한금액인 월 150만원으로 잠정결정(기존 월110만원)

◇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개정내용

현 행			개 정 안		
구 분	의정활동비 지급범위		구 분	의정활동비 지급범위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	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
사군자차구의원	월 900,000원 이내	월 200,000원 이내	사군자차구의원	월 1,200,000원 이내	월 300,000원 이내

2 발표자에 관한 사항

○ 발표자 대상

- 남원시민 중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 · 법조계 · 언론계 · 시민사회 단체 · 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지자체에서 선정
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38조의 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

○ 자격조건 : 제출일 기준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남원시민

- 단, 남원시 공무원 및 남원시의회 의원, 그 배우자 · 직계존비속 · 형제자매 제외

3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

○ 신청방법 : 발표신청서(붙임1) 제출

- 방 문 : 남원시 기획실 기획팀
- 팩 스 : 063-620-6702
- 이메일 : jic1993@korea.kr

※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한 경우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(☎620-6013)

○ 신청기간 : 2. 1.(목) ~ 2. 8.(목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 / 8일간

○ 발표인원 : 4명 내외(찬반 의견 발표자 수 동일하게 선정 예정)

○ 발표시간 : 발표자별 5분 이내

○ 발표내용 :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한하여 의견 발표

○ 발표자 선정일 : 2024. 2. 13.(화) ※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

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

- 자격조건 : 제출일 기준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남원시민
- 제출기간 : 2024. 2. 1.(목) ~ 2. 8.(목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제출방법 : 이메일(jic1993@korea.kr)로 의견서(붙임2) 제출

5

기타사항

- 공청회는 남원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,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4년 2월 16일 14시까지 남원시청 강당(1층)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실(☎ 063-620-60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주민 공청회 발표 신청서

발 표 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휴대전화		직 업	
	이 메 일			

2024년 ~ 2026년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
▣ 의정활동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

-
-

※ 실제 발표할 원고는 발표자 선정 후 작성 요청 예정 (5분 이내 분량)

□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

1. 수집·이용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휴대전화, 이메일, 직업(수집 후 6개월간)
2. 수집·이용 목적 : 의정활동비 관련 공청회 발표자 자격 확인
3.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.

※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 미동의

붙임 2

의견제출서

의견제출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
2024년 ~ 2026년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

의정활동비 잠정결정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

-
-

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

1. 수집·이용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(수집 후 6개월간)
2. 수집·이용 목적 : 의정활동비 관련 의견제시 자격 확인
3.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.

※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 미동의